

# 상소위원회 규정

사단  
법인

대한철인3종협회

제정 2005. 01. 27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경기 중 발생하는 경기규칙 적용에 관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범위)** 본 규정은 본협회 및 각 시, 도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에서 발생한 경기 규칙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에 적용한다.

**제3조(설치)** 경기중 발생하는 경기 규칙 적용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본 협회에서 상소위원회를 둔다. (이하 본 위원회라 칭한다.)

**제4조(기능)**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.

- ① 모든 항의나 이의신청에 대하여 고려하고 판정한다.
- ② 경기규칙에서 애매한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.
- ③ 항의나 이의신청과 관련된 선수나 단체와 같은 지역이거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관계(친척, 코치 등)를 가진 경우, 협회 경기위원회나 이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교체되어야 한다. 만약 위원장이 이런 이유로 위원회를 떠나야 할 때는 본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장을 뽑아야 한다.

**제5조(조직)**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- ① 위 원 장 1인
- ② 위 원 4명
- ③ 위원은 한 지역 협회에서 최대 2명을 가질 수 있고 아래와 같이 5명으로 구성된다.
  - 위원장(경기위원회에서 대표자) 1인
  - 기술감독 1인
  - 개최 시도협회 대표자 1인
  - 심판위원회에서 대표자 1인
  - 의료위원회에서 대표자 1인

**제6조 (회 의)**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한다.

- ① 경기 전: 본 위원회는 경기일 최소 하루 전 명단을 발표하고 공식 첫 모임을 갖는다. 본 위원회는 경기에 대한 기술적 측면과 의료적 측면에 대하여 기술감독과 의료위원으로부터 요약설명을 청취한다.
- ② 경기 진행 중: 상소위원은 경기의 기술적 측면을 살펴본다.
- ③ 경기 후 : 상소위원은 한 차례 모임을 갖고 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을 하여 공고한다.

## 제2장 판 결

**제8조 (절차)** 이의신청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.

- ① 선수가 이의가 있을 경우 경기 종료 후 30분 이내에 사무국에 이의 신청서를

접수비 50,000원과 함께 사무국에 제출한다.

- ② 이의신청을 받은 사무국은 즉각 본 위원회의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구한다.
- ③ 위원장은 바로 회의를 소집하여 3시간 이내에 판결하여 공고한다.

**제9조 (판결 원칙)** 본 위원회는 제공된 증언과 증거에 동등한 비중을 둔다.

- ① 증언이 개인적인 관찰과 증거 재 수집으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고,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.
- ② 증거가 제출 될 때까지는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한다.
- ③ 소문으로 알려진 규칙위반이 본 위원회의 공식적 판결 전까지는 선수가 무고하다고 인식해야 한다.
- ④ 참석위원의 다수결로 판결하고,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**제10조 (본 위원회 회의실)** 본 위원회의 모임을 갖을 수 있는 회의실이 요구되고, 회의실의 위치는 경기설명회 때 발표된다. 회의실에는 책상, 의자 8개, 음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.

**제11조 (이의신청)**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본 협회 경기위원회에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

## 부 칙

**제12조(시행)** 이 규정은 2005년 1월 27일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.